

#### 4.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연속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원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아래 a항목),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b-f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단, b)~f)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력 및 소아청소년 신경 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a)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 2년차 이상 근무
    -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d) 연구소 근무
    - e) 해외연수
    - f) 그 외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점 이수: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3장 제10조 참조)
  3.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4. 전임의 수련기간 또는 응시자격 심사직전 2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표2.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	---

5.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교육회기 기준)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레지던트 수련기간은 제외)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한 자(단, 대한소아신경학회지인 Annals of Child Neurology 에 단독 제1저자로 최소 1편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표3. 인정학술지 및 연관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Annals of Child Neurology)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6. 환자진료: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 a) 소아신경 관련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분과지도전문의의 참여 진료 환좌 가능)
  - b) 소아신경 관련 외래환자 100명 이상(분과지도전문의의 참여 진료 환좌 가능)
  - c) 타 과와의 소아신경 관련 진료상담 20건 이상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신경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1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분과지도전문의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분과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 채점

채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 한다.

#### [제10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④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